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 목차			
14	[부록 목차]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리 대 상자용)	[부록 목차]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II.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p>II.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p> <p>1. 사례 정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div> <p>○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p>	<p>II. -----</p> <p>1.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진단을 ----- : ----- <li style="color: red;">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li style="color: red;">* 22. 3. 14. ~ 22. 4.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div> <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진단을 -----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p>〈지침관리팀, 진단총괄팀, 역학조사팀, 상황관리팀〉</p> <p>확진자 급증에 따른 신고체계 변경 → 의사항자 사례정의 수정</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이하 생략)	<p>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p> <p>▶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p> <p>※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p> </div>	<p><상황관리팀> 확진환자 사례정의 개정에 따른 확진환자 신고 시 주의사항 추가</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무료 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부록 38 참고)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 border="1" data-bbox="987 416 1686 948"> <thead> <tr> <th data-bbox="987 416 1339 523">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th> <th data-bbox="1339 416 1686 523">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87 523 1339 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td> <td data-bbox="1339 523 1686 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td> </tr> </tbody> </table> <p>*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p>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p>〈진단검사운영팀〉 병·의원에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되며,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경우 검사비 지원을 위해 의사환자 신고</p>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1	○ (의료기관)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 ----- -----	〈상황관리팀〉 확진환자 사례정의 개정에 따른 확진환자 신고 절차 개정, 보건소 이전보고 받은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신 설)	<p>○ (보건소)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시·도 로 즉시 보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p> <p>*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확진(양성) 결과 확인</p> <p>- (보건소별 이관) 확진환자 실거주지 보건소가 다른 경우 최초인지 보건소는 신고서 입력 후 실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하여 관리 연계, 보건소는 매일 이관 사항 확인</p> <p>- (의료기관 신고 건 확인·승인) 관할 의료기관 확진자 신고 건을 매일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승인</p>	<p>-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p> </div> <p>○ ----- ----- -----</p> <p>* ----- ---</p> <p>- (이전보고 받은건) 검사관할보건소에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보고된 발생보고건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리</p> <p>*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이전보고 받은건 → 조회 → 환자 클릭 → ‘이전보고건 보고’</p> <p>- (병의원 신고건) 관내 병의원(의료기관) 양성 신고건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리</p> <p>*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병원 신고건 → 조회 → 환자 클릭 → ‘수정 보고’</p>	<p>건 및 병원신고건에 대한 용어 정리 및 절차 안내</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4	<p>○ (의료기관)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 정의 기준 (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여 신고</p> <p>관 련 서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비고’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 의료기관 신고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반드시 신고 <p>▶ 의료기관 신고 필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 사소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p>○ ----- ----- -----</p> <p>관 련 서 ----- 식</p> <p>----- ----- -----</p> <p>- (삭 제)</p>	<p>〈상황관리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17호) 변경에 따라 의사환자 신고 필요사항 삭제</p>
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6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p> <p>▶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 실시(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지속(격리면제자 제외)</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p> <p>▶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간 격리 조치(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 (삭제)</p>	<p>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및 격리 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에 따른 조치 ※ 방대본-6726호(2022.2.23.) 8차 시행</p>
16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p>	<p>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경 (22.3.10.부터 시행) ※ 방대본-8846호(2022.3.7.)</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채발 급하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맞는 동감사</p> <p>▶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법무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을 이용하여 확인</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p> <p>▶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법무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을 이용하여 확인 ▶ 격리통지서는 입국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p>	<p>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및 격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에 따른 조치 ※ 방대본-6726호(2022.2.23.) 既시행</p>
17 ~ 18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2) 격리 조치 ○(지자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및 자가격리</p> <p>▶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및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2) 격리 조치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 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p>	<p>-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및 격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에 따른 조치 ※ 방대본-6726호(2022.2.23.) 既시행</p> <p>-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경(22.3.10.부터 시행) ※ 방대본-8846호(2022.3.7.)</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적용</p>																																																																																							
18	<p>▶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235 399 918 1236"> <thead> <tr> <th>구분</th> <th>입국장소</th> <th>대상자</th> <th>진단검사</th> <th>격리시설</th> <th>설치업</th> </tr> </thead> <tbody> <tr> <td>유증상자</td> <td>공항</td> <td>입국자 전수</td> <td>권역센터</td> <td>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td> <td>-</td> </tr> <tr> <td rowspan="4">무증상자</td> <td rowspan="3">공항</td> <td>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 <td>보건소</td> <td>자가</td> <td>(행안부) 자가격리차 안전보호 앱</td> </tr> <tr> <td rowspan="2">단기체류외국인</td> <td>인천공항</td> <td>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td> <td>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td> <td rowspan="2">(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td> </tr> <tr> <td>그 외 공항</td> <td>지자체 지정 격리시설</td> <td>지자체 지정 격리시설</td> </tr> <tr> <td>격리면제자</td> <td>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항만</td> <td>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 <td>권역센터</td> <td>자가</td> <td>(행안부) 자가격리차 안전보호 앱</td> </tr> <tr> <td>단기체류외국인</td> <td>권역센터</td> <td>해수부 운영 격리시설</td> <td>(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td> </tr> <tr> <td>격리면제자</td> <td>권역센터</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설치업	유증상자	공항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차 안전보호 앱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차 안전보호 앱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p>▶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985 399 1668 1236"> <thead> <tr> <th>구분</th> <th>입국장소</th> <th>대상자</th> <th>진단검사</th> <th>격리시설</th> <th>설치업</th> </tr> </thead> <tbody> <tr> <td>유증상자</td> <td>공항만</td> <td>입국자 전수</td> <td>권역센터</td> <td>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td> <td>-</td> </tr> <tr> <td rowspan="6">무증상자</td> <td rowspan="3">공항</td> <td>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 <td>보건소</td> <td>자가</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2">단기체류외국인</td> <td>인천공항</td> <td>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td> <td>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td> <td rowspan="2">(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td> </tr> <tr> <td>그 외 공항</td> <td>지자체 지정 격리시설</td> <td>지자체 지정 격리시설</td> </tr> <tr> <td>격리면제자</td> <td>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항만</td> <td>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 <td>권역센터</td> <td>자가</td> <td>(삭제)</td> </tr> <tr> <td>단기체류외국인</td> <td>권역센터</td> <td>해수부 운영 격리시설</td> <td>(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td> </tr> <tr> <td>격리면제자</td> <td>권역센터</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설치업	유증상자	공항만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삭제)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삭제)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p>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방대본-6726호(2022.2.23.) 폐기행</p>
구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설치업																																																																																				
유증상자	공항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차 안전보호 앱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차 안전보호 앱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구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설치업																																																																																				
유증상자	공항만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삭제)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삭제)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18 ~ 19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라.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p>		<p>해외입국격리자 대상 지자체 관리 삭제 *격리자관리 방법은 본 지침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참조</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고위험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p> <p>▶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p> <p>○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p> <p>— (시·도/시·군·구) 자기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점검 실시 등</p> <p>▶ 외국인 중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부록 14]를 참조하여 외국인의 인적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공문 통보</p> <p>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p> <p> 참고자 [부록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p> <p> 공문 국인의 인적사항 통보</p>	<p>(삭제)</p>	<p>※ 방대본-6726호(2022.2.23.) ㄸ시행</p>
<p>20 ~ 21</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p> <p>가. 기관별 역할</p> <p>○(출입국심사대)~</p> <p>▶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p> <p>—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제외자</p> <p>▶ 국내 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p> <p>— 입국시 자기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p> <p>▶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기진단앱은 설치함</p> <p>▶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명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기격리앱 설치 안내</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p> <p>가. 기관별 역할</p> <p>○(출입국심사대)~</p> <p>(삭제)</p>	<p>해외입국자 대상 자기격리앱 설치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p> <p>※ 방대본-6726호(2022.2.23.) ㄸ시행</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p> <p>○ ~</p> <table border="1" data-bbox="215 363 920 683"> <thead> <tr> <th>구분</th> <th>입국후</th> <th>접종 이력 등록</th> <th>증명서 발급 (보건소)</th> <th>등록 후</th> </tr> </thead> <tbody> <tr> <td>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td> <td>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면제 유지</td> </tr> <tr> <td>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td> <td>격리 (자가진단용 분기)</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td> </tr> <tr> <td>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td> <td>격리 (자가진단용 분기)</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td> </tr> <tr> <td>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td> <td>격리 (자가진단용 분기)</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td> </tr> </tbody> </table>	구분	입국후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보건소)	등록 후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면제 유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격리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p>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p> <p>○ ~</p> <table border="1" data-bbox="965 403 1671 722"> <thead> <tr> <th>구분</th> <th>입국후</th> <th>접종 이력 등록</th> <th>증명서 발급 (보건소)</th> <th>등록 후</th> </tr> </thead> <tbody> <tr> <td>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td> <td>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면제 유지</td> </tr> <tr> <td>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td> <td>격리</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td> </tr> <tr> <td>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td> <td>격리</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td> </tr> <tr> <td>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td> <td>격리</td> <td>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 <td>예방접종확인서</td> <td>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td> </tr> </tbody> </table>	구분	입국후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보건소)	등록 후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면제 유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격리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구분	입국후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보건소)	등록 후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면제 유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격리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구분	입국후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보건소)	등록 후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면제 유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격리	진찰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7일간 격리)																																																	
21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p> <p>가. 증상별 대응 절차</p> <p>○ 검역단계 무증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215 930 920 1121"> <thead> <tr> <th>구분</th> <th>PCR 음성확인서</th> <th>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th> <th>격리</th> <th>추가검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격리 면제서 제출</td> <td>제출 (격압)</td> <td>임시생활사본</td> <td>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td> <td>6-7일차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td> </tr> <tr> <td>미제출 (외국인 징국분류)</td> <td>임시생활사본</td> <td>사별격리 5일 (8일 입국시 6일) + 자가격리 5일</td> <td>격리해제권 행사 (보건소)</td> </tr> </tbody> </table>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제출 (격압)	임시생활사본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미제출 (외국인 징국분류)	임시생활사본	사별격리 5일 (8일 입국시 6일) + 자가격리 5일	격리해제권 행사 (보건소)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p> <p>가. 증상별 대응 절차</p> <p>○ 검역단계 무증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965 930 1671 1121"> <thead> <tr> <th>구분</th> <th>PCR 음성확인서</th> <th>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th> <th>격리</th> <th>추가검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격리 면제서 제출</td> <td>제출 (격압)</td> <td>임시생활사본</td> <td>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td> <td>6-7일차 RAT 실시</td> </tr> <tr> <td>미제출 (외국인 징국분류)</td> <td>임시생활사본</td> <td>사별격리 5일 (8일 입국시 6일) + 자가격리 5일</td> <td>6-7일차 RAT 실시</td> </tr> </tbody> </table>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제출 (격압)	임시생활사본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6-7일차 RAT 실시	미제출 (외국인 징국분류)	임시생활사본	사별격리 5일 (8일 입국시 6일) + 자가격리 5일	6-7일차 RAT 실시	<p>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경 (22.3.10.부터 시행)</p> <p>※ 방대본-8846호(2022.3.7.)</p>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제출 (격압)	임시생활사본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미제출 (외국인 징국분류)	임시생활사본	사별격리 5일 (8일 입국시 6일) + 자가격리 5일	격리해제권 행사 (보건소)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제출 (격압)	임시생활사본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용 분기)	6-7일차 RAT 실시																																																	
	미제출 (외국인 징국분류)	임시생활사본	사별격리 5일 (8일 입국시 6일) + 자가격리 5일	6-7일차 RAT 실시																																																	
23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4.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p> <p>4) 격리 조치</p> <p>○(보건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업” 설치(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업”은 삭제) 및 자가격리</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4.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p> <p>4) 격리 조치</p> <p>○(보건소)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 실시</p>	<p>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에 따른 조치</p> <p>※ 방대본-6726호(2022.2.23.) 既시행</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6. 진단검사</p> <p>▶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p> <p>○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p> <p>▶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선자는 전수 권역센터에서 진단검사 실시</p> <p>○ 모든 입국자는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p> <p>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자가 시설격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해제 전 검사 시행</p>	<p>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p> <p>6. 진단검사</p> <p>(삭제)</p> <p>○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p> <p>▶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선자는 전수 권역센터에서 PCR검사 실시</p> <p>○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p>	<p>진단검사법이 PCR, RAT로 구분됨에 따라 검사법 명확하게 명시</p> <p>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경 (22.3.10.부터 시행)</p> <p>※ 방대본-8846호(2022.3.7.)</p>
V. 확진환자 대응방안			
25	<p>가. 격리 통보</p> <p>○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격리통지를 실시하고(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격리통지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등으로 통보(환자가 문서로 요청 시 서면 격리통지서 발급)</p> <p>- 확진환자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보건소는 매일 확진환자 이관된 현황 확인하여 격리통보 및</p>	<p>가. 격리 통보</p> <p>○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격리통지를 실시하고(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격리통지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환자가 문서로 요청 시 서면 격리통지서 발급)</p> <p>* 단,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확진자 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동시 전송 권고</p>	<p>세부적인 설명 추가</p> <p>내용 일부 수정: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격리통지가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같음</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가족 동거인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 배정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시설 내 검사 등 관련 사항 안내 <p>▶ 격리 통지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통보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격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변경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격리기간이 변경되거나 ②병원전원으로 격리장소 및 격리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 통보 (절차는 최초 격리통지서 통보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보건소는 매일 확진환자 이관된 현황 확인하여 격리통보 및 가족 동거인 여부 확인 - 병상 배정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시설 내 검사 등 관련 사항 안내 <p>▶ 격리 통지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통보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격리기간 해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 (24:00) ○ 법정 격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 ○ 변경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격리기간이 변경되거나 ②병원전원으로 격리장소 및 격리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 통보 (절차는 최초 격리통지서 통보와 동일) 	
30	<p>▶ 7일 후 퇴소하여 자가격리 3일 시행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적용</p>	(삭 제)	<p>〈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p>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해제 확인서)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p>▶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p> <p>✎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이 가능하므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p>(삭 제)</p>	<p>〈생치확충반〉 '22.2.25 중대본 논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부적절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조정하여 즉시 적절한 장소(병원/재택/일반/거점 생활치료센터)로 재배정 ▶ 관할지역 확진환자는 구 및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고, 관할지역 내 입소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 등 권역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반은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통보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부적절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조정하여 즉시 적절한 장소(병원/재택/일반/거점 생활치료센터)로 재배정 ▶ 관할지역 확진환자는 구 및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고, 관할지역 내 입소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 등 권역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반은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통보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p>〈생치확충반〉 삭제</p>
35	<p>○ (퇴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격리 해제 및 퇴소 (신 설)</p> <p>▶ (예시) 10월 1일 확진된 경우, 10월 8일에 격리 해제</p>	<p>○ (퇴소) ----- -----</p> <p>* 야간 출입문 폐쇄, 퇴소 시 조치사항 실시 등으로 격리 해제 즉시 퇴소가 곤란하므로 실제 퇴소 시간은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p> <p>▶ (예시) 10월 1일 검사(검체채취)한 경우, 10월 7일 24시(8일 00시) 격리 해제, 10월 8일 오전 퇴소</p>	<p>〈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퇴소 시간 조정 필요</p>
35	<p>▶ 자가격리가 어려운 노숙인,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 고시원·썩방·기숙사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3일 추가 입소유지 가능</p>	<p>(삭 제)</p>	<p>〈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예방접종완료 여부 기준 등 관련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2. 확진환자 격리해제" 참고</p>		
35~36	<p>- (시스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시설 격리 후 퇴소 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는 자가격리 <u>전원으로</u> 입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에는 환자상태를 퇴소로 입력</p> <p>① (퇴소안내문 등) 퇴소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퇴소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등을 출력하여 안내</p> <p>참고자료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 (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p> <p>참고자료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u>생활수칙 안내문</u>(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의무 없음)</p> <p>참고자료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u>생활수칙 안내문</u></p> <p>② (위생용품) 자가격리 전환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잔여 위생용품(소독용품, 마스크 등) 지참하여 퇴소하도록 안내</p> <p>③ (퇴소 이동수단) 제한 없음, 개인차량(본인·동거가족 운전) 및 방역택시 우선 이용 권고</p>	<p>- (시스템) ----- ----- <u>격리해제로</u> ----- -----</p> <p>① (퇴소안내문 등) ----- ----- -----</p> <p>참고자료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 (퇴소 이동수단) ----- -----</p>	<p><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p>
37			<p><환자관리팀>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수정</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2. 확진환자 격리해제</p> <p>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p>2. 확진환자 격리해제</p> <p>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39	<p>▶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p> <p>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p>	<p>▶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p> <p>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12시 24:00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10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p>	예시 수정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p>☞ 참고자료 Q&A 중 6. 격리 및 격리해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p>✎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p>☞ 참고자료 Q&A 중 6. 격리 및 격리해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p>✎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p> </div>	“격리해제확인서” 폐지
40	<p>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p> <p>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p> <p>3-2.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조사</p> <p>3-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p>	<p>3. -----</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역학조사팀></p> <p>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40	<p>3-5. 역학조사 정보관리</p> <p>(신설)</p>	<p>(삭제)</p> <p>가.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체계 개편 <p>나.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p>▶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p>▶ 감염취약시설 3종</p> <p>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p>	<p><역학조사팀></p> <p>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p> <p>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관련 기본 원칙 안내</p> <p>(공문) (방대본-5002, '22.2.11.)</p> <p>(공문) (방대본-7354, '22.2.27.)</p>
40	<p>(신설)</p>	<p>다. 용어정의</p>	<p><역학조사팀></p> <p>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관련 용어정의 안내</p> <p>(공문) (방대본-7354, '22.2.27.)</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58 231 1099 279">용어</th> <th data-bbox="1099 231 1686 279">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58 279 1099 343">조사대상 접촉자</td> <td data-bbox="1099 279 1686 343">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 </tr> <tr> <td data-bbox="958 343 1099 406">격리대상 접촉자</td> <td data-bbox="1099 343 1686 406">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 </tr> <tr> <td data-bbox="958 406 1099 470">감염취약시설 3종</td> <td data-bbox="1099 406 1686 470">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td> </tr> <tr> <td data-bbox="958 470 1099 534">수동검사</td> <td data-bbox="1099 470 1686 534">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td> </tr> <tr> <td data-bbox="958 534 1099 598">격리</td> <td data-bbox="1099 534 1686 598">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td> </tr> <tr> <td data-bbox="958 598 1099 646">자율관리</td> <td data-bbox="1099 598 1686 646">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td> </tr> </tbody> </table>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수동검사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수동검사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41	(신설)	<p>라. 확진자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주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 실시 ▶ 재택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검사 관할 보건소 이관 금지) ▶ 검사 및 신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 조사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담당 ○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등을 조사 ○ (조사방식)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확진자 조사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자기기입 및 진술 기반 <p> 관련서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p>	<p><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실시 보건소 명확화 및 조사주체, 조사항목, 조사 방식 등 안내 (공문) (방대본-7354, '22.2.27.)</p>														
41	(신설)	<p>마. 접촉자 관리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의 동거인 	<p><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 (공문) (방대본-7354, '22.2.27.)</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65 233 1099 272">구분</th> <th data-bbox="1099 233 1677 27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65 272 1099 328">대상 구분</td> <td data-bbox="1099 272 1677 328">·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td> </tr> <tr> <td data-bbox="965 328 1099 416">관리 방식</td> <td data-bbox="1099 328 1677 416">·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td> </tr> <tr> <td data-bbox="965 416 1099 552">검사 권고기준</td> <td data-bbox="1099 416 1677 552">·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td> </tr> <tr> <td data-bbox="965 552 1099 799">권고 수칙</td> <td data-bbox="1099 552 1677 799">·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2	(신설)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65 879 1099 919">구분</th> <th data-bbox="1099 879 1677 919">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65 919 1099 999">대상 구분</td> <td data-bbox="1099 919 1677 99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td> </tr> <tr> <td data-bbox="965 999 1099 1102">관리 방식</td> <td data-bbox="1099 999 1677 1102">· 격리조치 : 7일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주의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 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td> </tr> <tr> <td data-bbox="965 1102 1099 1158">검사 기준</td> <td data-bbox="1099 1102 1677 1158">·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td> </tr> <tr> <td data-bbox="965 1158 1099 1198">권고 수칙</td> <td data-bbox="1099 1158 1677 1198">·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관리 방식	· 격리조치 : 7일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주의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 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검사 기준	·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	권고 수칙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	<p><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 (공문) (방대본-7354, '22.2.27.)</p>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관리 방식	· 격리조치 : 7일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주의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 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검사 기준	·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												
권고 수칙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												
42	(신설)	<p>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업무</p> <p>○ 확진자 조사 후 조사대상 접촉자에 대하여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에게 보내는 문자에 동거인 검사</p>	<p><역학조사팀>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관련 실거주지</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권고사항 및 권고 수칙 함께 안내</p> <p>▶ 동거인 안내문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p> <p>-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격리관리</p>	<p>관할 보건소 업무 안내 (공문) (방대본-7354, '22.2.27.)</p>
42	(신설)	<p>사. 격리 방식</p> <p>▶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적용</p> <p>○ (격리 수칙 준수) 격리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p> <p>▶ 격리 수칙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p> <p>○ (격리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p> <p>-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p> <p>○ (외부인 방문 제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p> <p>-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p> <p>- 출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p> <p>▶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 (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p>	<p><역학조사팀> 격리 대상 접촉자에 대한 격리 방식 안내 (공문) (방대본-7354, '22.2.27.)</p>
43	<p>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p> <p>가. 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의심자</p> <p>○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감염병의심자가 자가</p>	<p>3-1. -----</p> <p>가. -----</p> <p>○ -----</p>	<p><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안내</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격리 대상임</p> <p>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p> <p>▶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p>	<p>-----</p> <p>① -----</p> <p>-----</p> <p>(삭제)</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p>	<p>(공문) (방대본-5002, '22.2.11.)</p> <p>(공문) (방대본-7354, '22.2.27.)</p>
46	<p>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p> <p>○ (격리해제) 6~7일차 격리해제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확인 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p> <p>-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이후에 음성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해제됨</p> <p>- 해제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p> <p>(신설)</p>	<p>마. -----</p> <p>○ (-----) -----</p> <p>-----</p> <p>-----</p> <p>-----</p> <p>-----</p> <p>-----</p> <p>-----</p> <p>-----</p> <p>- 동거인(2명 이상) 중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기간(7일)이 연장되고 나머지 동거인은 최초 격리기간 유지 후 해제</p>	<p><역학조사팀></p> <p>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재택치료자 동거인은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됨을 안내</p> <p>(공문) (방대본-4430, '22.2.7.)</p>
62 ~ 67	<p>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p> <p>가. 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의심자</p> <p>▶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p>	<p>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p> <p>가. -----</p> <p>▶ 확진자</p> <p>▶ -----</p> <p>-----</p> <p>-----</p>	<p>(격리관리팀)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수정</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나. 자가격리 통지</p> <p>○ (통지방법) 지자체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우선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격리 사실 통보하고, 법정 격리통지서는 사후 발급할 수 있음</p> <p>- 격리 사실 통보 시 격리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격리안내문**(사진, PDF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전송</p> <p>* 격리대상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p> <p>** 확진자(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그 외 격리자(격리수칙안내문)</p> <p>- 격리 사실 통보는 최초 확진자를 통해 격리대상 동거인에게 일괄 통보할 수 있음</p> <p>-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격리사실 통보 시 법정 격리통지서 원본 사진을 촬영해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격리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별도 수령증 징구 생략 가능)</p> <p>- 해외입국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앱을 통한 격리 통지서 발급 가능</p>	<p>나. 격리통지 방법</p> <p>○ 격리통지는 입원·격리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나, 신속한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p> <p>* 사진, 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p> <p>-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격리통지서 발급</p> <p>* 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한다.</p> <p>-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p> <p>-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등 안내문을 함께 전송</p> <p>○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통지서 발급(사후발급 포함) 권고</p> <p>* (예) 코로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사후발급, 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 등</p> <p>○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질병관리청장 위임)</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격리통보 문자 예시 (☞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 확진자의 경우 경우</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1. 귀하와 귀하의 동거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됨을 통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대상자 : 확진자 ○○○, 동거인 ○○○, 동거인 ○○○ - 수동감시대상자 : 동거인 ○○○, 동거인 ○○○ - 격리기간 : '22. ○.○. ~ ○.○. 24:00(동거인은 음성인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1차(통지 후 3일 이내), 2차(수동감시 6~7일차) <p>2.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3. 첨부한 격리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통지서 사진촬영 첨부</p> <p>4.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p> </div>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격리관리) 격리자에 개별 이탈관리 및 건강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해외입국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국격리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입국시 접촉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p>○ (자가격리 키트 전달)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등 자가격리 키트는 지급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등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개별 지자체가 판단 <p>다. 자가격리 방법</p> <p>○ (공동격리) 장애인·영유아 등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의 경우</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대상자 : ○○○ - 격리기간 : '22. ○.○. ~ ○. 24:00(음성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PCR 검사 : 2회(접촉자 분류 즉시 1회, 6~7일차 1회) 2. 격리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한 안내문의 격리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p>☞ '자가격리자생활수칙 안내문' 등 첨부 또는 링크</p> </div> <p>○ (삭제)</p> <p>○ (삭제)</p> <p>다. -----</p> <p>○ (-----)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인 경우로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라. 일시 외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 외출)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 우선 활용 <p>*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진료) 「재택환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계」적용 <p>*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p>	<p>* 다만,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가능</p> <p>라. 일시 외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 외출) 해외입국자,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필수적 ----- (확진자는 진료목적 외에 외출 금지) <p>* 임종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p> <p>○ (-----) ----- ----- * ----- -----</p> <p>마.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해외입국자,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해당 보건소에 격리해제를 신청하면(신청서 작성), 장례기간 중 일시적으로 자가격리 해제를 허가함(해제서 발부)</p> <p>관 [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연서식 [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p> <p>▶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격리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장례식▶(발인, 삼우제 등 포함)참석 가능</p> <p>▶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p> <p>▶ (적용제외)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제도 미적용</p> <p>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p> <p>○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p> <p>▶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되어 별도의 격리명령이 통지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p> <p>▶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임종·장례식) 사유 등으로 승인한 경우</p> <p>▶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p> <p>▶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p> <p>① 중도출국 사유 근거자료 / ② 항공권</p> <p>○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중도출입국자 명단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연락 (032-740-7248/7284)</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p> <p>○ (격리기간) 자가격리 기간은 가구 내 최초확진자의 검체 채취 일(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p> <p>* 단,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시간 조정운영 가능</p> <p>▶ (격리기간 예시) 확진자 1명(검체채취일 2.9일), 격리대상 동거인 2명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격리기간 : 2.9~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2명 격리기간 : 2.9~2.15. 24시 ☞ 확진자와 동일 <p>○ (격리통지서) 법정격리통지서에는 실제 격리기간을 기재</p> <p>▶ (예시) 확진자 (검체채취일 2.9일, 양성확인 2.10일, 격리통보 2.10일), 격리대상 동거인 (검체채취일 2.10일, 음성확인 2.1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p>사. -----</p> <p>○ (-----) ① 확진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하되, 격리시작일은 격리통지일을 원칙으로 함</p> <p>② 감염취약시설 3종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p> <p>③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p> <p>※ 기타 사유로 자가격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에 명시한 기간을 격리기간으로 봄</p> <p>※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시간 조정운영 가능</p> <p>▶ 삭제</p> <p>○ (격리통지서) 법정격리통지서에는 실제 격리기간을 기재</p> <p>▶ (예시) 확진자 (검체채취일 2.9일, 양성확인 2.10일, 격리통보 2.1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1~2.15. 24시(즉, 2.16일 0시) <p>※ 격리해제 후 재검출 또는 단순재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격리통지 및 격리통지서 발급 불가</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24시(즉, 2.16일 0시) 확진 확진자와 동일</p> <p>○ (격리자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자가 밀접접촉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함</p> <p>- (1차) 격리통보를 받은 날, (2차 격리해제전 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p> <p>-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p> <p>▶ 미결정 상태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후속 모니터링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사 권고</p> <p>○ (격리해제) 6~7일차 격리해제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확인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p> <p>-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이후에 음성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해제됨</p> <p>- 해제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p>	<p>○ (-----) ----- 없더라도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 검사를 -----</p> <p>- (---) ----- 날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 -----신속항원검사(RAT)</p> <p>- (삭제)</p> <p>▶ 삭제</p> <p>○ (----) ----- 격리해제전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p> <p>- 삭제</p> <p>- 삭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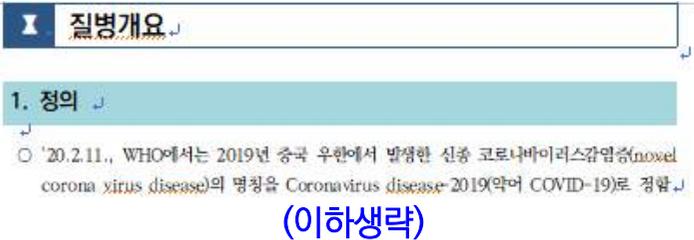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47	<p>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신설)</p>	<p>4. ----- 가. ----- ○ (격리해제 부적정)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요청 관련 격리해제 부적정 사례 정의 추가</p>
49	<p>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환자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관리조치 실시</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p> <p>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 입국자에 준해 관리)</p> <p>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 입원치료)</p> </div> <p>(신설)</p>	<p>4. ----- 나. ----- ○ (-----) -----</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p> <p>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 입국자에 준해 관리)</p> <p>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 입원치료)</p> <p>③ 격리해제 부적정 :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p> </div> <p>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p>	<p><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요청 관련 격리해제 부적정 사례 관리조치 추가</p>
50	<p>라. 재검출/재감염 사례 대응 흐름도</p>	<p>라. -----</p>	<p><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요청 관련 격리해제 부적정 사례 관리조치 추가</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 관리조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환자 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입국자에 준해 관리) - 재검업 추정 : 격리입원치료,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파 • 사태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접촉자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재검출 : 접촉자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 재검업 추정 :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자가, 시설, 병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 관리조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환자 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입국자에 준해 관리) - 재검업 추정 : 격리입원치료,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파 - 격리해제 부적정 : 격리해제 처리 취소, 재격리 및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 적용 • 사태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접촉자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재검출 : 접촉자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 재검업 추정 :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자가, 시설, 병원) </div>	

Ⅶ. 실험실 검사 관리

89	○ (응급선별검사)	○ (응급용 -----)	(진단총괄팀) 용어수정
89	<p>○ (신속항원검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등 일반 의료기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신속항원검사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원 환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div>	<p>○ (신속항원검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등 일반 의료기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신속항원검사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원 환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div>	(중수본) 보험급여과 수정
91	<p>5. 검사기관별 결과 보고</p> <p>2) 응급선별검사</p> <p>○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확진검사(유전자검사) 실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 실시 안내</p> <p>참고자료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p> <p>▶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p> </div>	<p>5. -----</p> <p>2) 응급용 -----</p> <p>○ (---- --)</p> <p>①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p> <p>②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유전자검사) ▶ 추가 실시</p> <p>*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시 확진환자 신고</p>	(진단총괄팀)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수정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3) 신속항원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확진검사(유전자검사) 실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 실시 안내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PCR 검사 권고 -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한 경우는 음성확인서 발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p>☞ 참고자료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검사 -----, ----- ▶ ----- </div> <p>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①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 ②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유전자검사) ▶ 추가 실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 실시 안내 <p>☞ 참고자료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확진검사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삭제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참조	▶ 삭제	
X. 질병개요			
101	 <p>(이하생략)</p>	부록 39로 이동	(지침관리팀) 부록 39로 이동
서식			
120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서식 4. 삭제	(격리관리팀) 격리통지서 수령증 징구 의무 폐지에 따라 서식 삭제
87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양식 수정 (공문) (방대본-5002, '22.2.11.)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div data-bbox="226 252 896 55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성명 NAME</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20%;">생년월일 DATE OF BIRTH</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td> <td colspan="3">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td> </tr> <tr> <td>격리시자인</td> <td></td> <td>격리해제인</td> <td></td> </tr> </table> </div>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자인		격리해제인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자인		격리해제인													
141	<p>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p> <p>위의 신청인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0일간 격리무무를 이행하는 도중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키는 조건으로 일시적 격리해제 허가를 신청합니다.</p> <p>[일시적 격리해제 관련 확인·준수사항]</p> <p><input type="checkbox"/> 일시적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별도 통지된 경우 및 격리해제 사유 이외의 활동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일시적 격리해제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함을 확인.</p> <p><input type="checkbox"/> 일시적 격리해제 기간 중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을 것임.</p>	<p>서식 21. -----</p> <p>위의 신청인은 7일간 -----</p> <p>-----.</p> <p>[-----]</p> <p><input type="checkbox"/> -----양성 으로 자가격리가 -----</p> <p>-----.</p> <p><input type="checkbox"/> (삭제)</p>	<p>(격리관리팀) 확진자 접촉자 수동감시 전환 및 전담 공무원 매칭 관리 폐지 반영</p>												
142	<p>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보인소지용]</p> <p>위의 일시적 격리해제 대상자는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0일간 격리무무를 이행하는 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일시적</p>	<p>서식 22. -----[-----]</p> <p>위의 일시적 격리해제 대상자는 7일간-----</p> <p>-----</p> <p>-----</p>	<p>(격리관리팀) 확진자 접촉자 수동감시 전환 및 전담 공무원 매칭 관리 폐지 반영</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격리해제를 신청한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일시적 격리해제를 허가합니다.</p> <p>[일시적 격리해제 허가조건]</p> <p>① 일시적 격리해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별도 통지된 경우 및 격리해제 사유 이외의 활동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일시적 격리해제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함.</p> <p>② 일시적 격리해제 기간 중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함.</p>	<p>----- ----- [-----] ① -----양성 으로 자가격리가 ----- ----- ----- ② (삭제)</p>	
부록			
157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부록 2. 삭제	(격리관리팀) 자가격리자엽 관리업무의 보건부서 일원화에 따라 삭제
158	<p>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p> <p>○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p> <p>○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p>	<p>부록 3. -----</p> <p>○ -----원칙적으로 외출 및 외부인 방문이-----. - 단,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또는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p> <p>○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을 우선 활용하시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 수령, 식품품 구매, 자기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외출시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확진자는 진료목적 외의 외출 금지</p>	(격리관리팀) 해외입국 및 감염취약 시설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용 안내문으로 자가격리엽 미설치 및 전담공무원 매칭 관리 폐지 반영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 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p> <p>○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p> <p>○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됩니다.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p> <p>○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확진자와 접촉 후 7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삭제)</p> <p>○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p> <p>○ (삭제)</p> <p>○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p> <p>○ (삭제)</p>	
170			<p>(지침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에 따라 변경 (공문) (방대본-9059, '22.3.8.)</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부록 6 (붙임)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p> <p>○ 확진환자 병실은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1인실이 원칙</p> <p>- 음압병실이 없을 경우 최대한 확진환자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p> <p>▶ (공조시설 기준) 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p> <p>- 1인실이 없을 시, 일반 환자와의 동선을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환자 다인실 병실 사용 가능</p> <p>○ 의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압 1인실 또는 일반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에 입원 조치</p> <p>○ 음압 병실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은 의료시설 등이 필요한 환자부터 배정</p> <p>▶ 병실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 65세 이상 ·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신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임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특수상황: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p>▶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우선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압 1인실 입원 ② 음압 다인실 입원 ③ 일반 1인실 입원 ④ 일반 다인실 입원(* 환자의 병상간격 3m는 필수사항 아님) ⑤ 한 층의 모든 병실 이용 <p>* 전담병원의 경우 병원 전체 이용가능</p> <p>※ ③, ④, ⑤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 일반환자와 동선을 분리하거나 이동시간을 분리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다른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 (공조시설 기준) 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상기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조의 급기를 차단하고 배기만 유지하거나, 공조를 끄고 음압기를 통해 강제배기 	<p>부록 6 (붙임)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p> <p>○ 확진환자 병실은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1인실이 원칙</p> <p>- 음압병실이 없을 경우 최대한 확진환자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p> <p>▶ (공조시설 기준) 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p> <p>- 1인실이 없을 시, 일반 환자와의 동선을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환자 다인실 병실 사용 가능</p> <p>○ 의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압 1인실 또는 일반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에 입원 조치</p> <p>○ 음압 병실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은 의료시설 등이 필요한 환자부터 배정</p> <p>▶ 병실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 65세 이상 ·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신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임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특수상황: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p>○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해 다음을 참고한다.</p> <p>▶ 코로나19 병실 사용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환자(격리기간 중)는 코로나19가 아닌 환자와 병실을 분리한다.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다. - 단,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압격리를 권고한다. -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대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격리실 사용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환기 등)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 에어로졸 발생 가능한 의료시설이 필요한 경우,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위험이 높은 환자 등 	
176			<p>(지침관리팀)</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변경에 따라 수정 (공문) (방대본-9059, '22.3.8.)</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상황, 행위</th> <th colspan="6">개인보호구</th> <th rowspan="3">고글 (또는 안면보호구)</th> </tr> <tr> <th colspan="2">호흡기 보호</th> <th colspan="3">전신 보호</th> <th rowspan="2">눈 보호</th> </tr> <tr> <th>수술용 마스크</th> <th>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th> <th>전동식 호흡기 보호구</th> <th>일회용 장갑¹⁾</th> <th>일회용 방수성 장갑¹⁾</th> <th>전신보호복 (덧신포함)</th> </tr> </thead> <tbody> <tr> <td>검역</td> <td>검역(검역조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검역(역학조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선별 진료소</td> <td>선별진료소 접수, 안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선별진료소 진료, 간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송</td> <td>이송(구급차 운전자)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의심환자 동승 보호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료</td> <td>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에어로졸 생성 처치³⁾</td> <td>●</td> <td>(선택 사용 가능)</td> <td>●</td> <td>●</td> <td>(선택 사용 가능)</td> <td>●</td> <td>●</td> </tr> <tr> <td></td> <td>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호흡기 검체 채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검체 관리</td> <td>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검체 이송(피손없이 포장된 검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장례</td> <td>사신 접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사신백 이송, 관 운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청소· 소독</td> <td>청소·소독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폐기물</td> <td>의료폐기물 포장, 취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의료폐기물 운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장갑 ¹⁾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검역	검역(검역조사)	●	●	●	●	●	●	●		검역(역학조사)	●	●	●	●	●	●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	●	●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	●	●	●	●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³⁾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⁴⁾	●	●	●	●	●	●	●		검체 이송(피손없이 포장된 검체)	●	●	●	●	●	●	●	장례	사신 접촉	●	●	●	●	●	●	●		사신백 이송, 관 운구	●	●	●	●	●	●	●	청소· 소독	청소·소독 ⁵⁾	●	●	●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	●	●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상황, 행위</th> <th colspan="6">개인보호구</th> <th rowspan="3">고글 (또는 안면보호구)</th> </tr> <tr> <th colspan="2">호흡기 보호</th> <th colspan="3">전신 보호</th> <th rowspan="2">눈 보호</th> </tr> <tr> <th>수술용 마스크</th> <th>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th> <th>전동식 호흡기 보호구</th> <th>일회용 장갑¹⁾</th> <th>일회용 방수성 장갑¹⁾</th> <th>전신보호복 (덧신포함)</th> </tr> </thead> <tbody> <tr> <td>검역</td> <td>검역(검역조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검역(역학조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선별 진료소</td> <td>선별진료소 접수, 안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선별진료소 진료, 간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송</td> <td>이송(구급차 운전자)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의심환자 동승 보호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료</td> <td>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에어로졸 생성 처치³⁾</td> <td>●</td> <td>(선택 사용 가능)</td> <td>●</td> <td>●</td> <td>(선택 사용 가능)</td> <td>●</td> <td>●</td> </tr> <tr> <td></td> <td>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호흡기 검체 채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검체 관리</td> <td>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검체 이송(피손없이 포장된 검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장례</td> <td>사신 접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사신백 이송, 관 운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청소· 소독</td> <td>청소·소독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폐기물</td> <td>의료폐기물 포장, 취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의료폐기물 운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장갑 ¹⁾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검역	검역(검역조사)	●	●	●	●	●	●	●		검역(역학조사)	●	●	●	●	●	●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	●	●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	●	●	●	●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³⁾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⁴⁾	●	●	●	●	●	●	●		검체 이송(피손없이 포장된 검체)	●	●	●	●	●	●	●	장례	사신 접촉	●	●	●	●	●	●	●		사신백 이송, 관 운구	●	●	●	●	●	●	●	청소· 소독	청소·소독 ⁵⁾	●	●	●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	●	●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장갑 ¹⁾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검역	검역(검역조사)	●	●	●	●	●	●	●																																																																																																																																																																																																																																																																																																																																																																									
	검역(역학조사)	●	●	●	●	●	●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	●	●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	●	●	●	●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³⁾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⁴⁾	●	●	●	●	●	●	●																																																																																																																																																																																																																																																																																																																																																																									
	검체 이송(피손없이 포장된 검체)	●	●	●	●	●	●	●																																																																																																																																																																																																																																																																																																																																																																									
장례	사신 접촉	●	●	●	●	●	●	●																																																																																																																																																																																																																																																																																																																																																																									
	사신백 이송, 관 운구	●	●	●	●	●	●	●																																																																																																																																																																																																																																																																																																																																																																									
청소· 소독	청소·소독 ⁵⁾	●	●	●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	●	●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장갑 ¹⁾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검역	검역(검역조사)	●	●	●	●	●	●	●																																																																																																																																																																																																																																																																																																																																																																									
	검역(역학조사)	●	●	●	●	●	●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	●	●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	●	●	●	●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³⁾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⁴⁾	●	●	●	●	●	●	●																																																																																																																																																																																																																																																																																																																																																																									
	검체 이송(피손없이 포장된 검체)	●	●	●	●	●	●	●																																																																																																																																																																																																																																																																																																																																																																									
장례	사신 접촉	●	●	●	●	●	●	●																																																																																																																																																																																																																																																																																																																																																																									
	사신백 이송, 관 운구	●	●	●	●	●	●	●																																																																																																																																																																																																																																																																																																																																																																									
청소· 소독	청소·소독 ⁵⁾	●	●	●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	●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7	<p>▶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p> <p>1) 의심·확진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p> <p>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p> <p>3)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p> <p>4)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p> <p>5)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p> <p>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p> <p>6)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p>	<p>▶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p> <p>1) 의심·확진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p> <p>1)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p> <p>2)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p> <p>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p> <p>4)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p> <p>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p> <p>5)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p>	<p>(지침관리팀)</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변경에 따라 수정 (공문) (방대본-9059, '22.3.8.)</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8	<p>-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p> <table border="1" data-bbox="232 277 920 699"> <thead> <tr> <th>보호대상</th> <th>개인보호구</th> <th>필수여부</th> <th>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호흡기</td> <td>일회용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td> <td>○</td> <td>-</td> </tr> <tr> <td>PAPR(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td> <td>필요 시</td> <td>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td> </tr> <tr> <td>눈</td> <td>고글(또는 안면보호구)</td> <td>○</td> <td>김서림방지 및 굴힘 방지 코팅 처리</td> </tr> <tr> <td rowspan="4">전신 의복</td> <td>일회용 전신보호복</td> <td>○</td> <td>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td> </tr> <tr> <td>일회용 장갑</td> <td>○</td> <td>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td> </tr> <tr> <td>일회용 덧신(신발덮개)</td> <td>○</td> <td>발목 높이의 미끄럼지 않은 재질</td> </tr> <tr> <td>일회용 덧가운/얹치마</td> <td>필요 시</td> <td>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td> </tr> </tbody> </table>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	-	PAPR(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김서림방지 및 굴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럼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얹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p>-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p> <table border="1" data-bbox="965 277 1680 705"> <thead> <tr> <th rowspan="2">보호대상</th> <th rowspan="2">개인보호구</th> <th colspan="2">필수여부</th> <th rowspan="2">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th> </tr> <tr> <th>4종</th> <th>전신 보호복</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호흡기</td> <td>일회용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td> <td>○</td> <td>○</td> <td>-</td> </tr> <tr> <td>PAPR(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td> <td>필요 시</td> <td>필요 시</td> <td>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td> </tr> <tr> <td>눈</td> <td>고글(또는 안면보호구)</td> <td>○</td> <td>○</td> <td>김서림방지 및 굴힘 방지 코팅 처리</td> </tr> <tr> <td rowspan="4">전신 의복</td> <td>일회용 전신보호복</td> <td>○</td> <td>○</td> <td>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td> </tr> <tr> <td>일회용 장갑</td> <td>○</td> <td>○</td> <td>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td> </tr> <tr> <td>일회용 덧신(신발덮개)</td> <td>필요 시</td> <td>○</td> <td>발목 높이의 미끄럼지 않은 재질</td> </tr> <tr> <td>일회용 덧가운/얹치마</td> <td>필요 시</td> <td>필요 시</td> <td>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td> </tr> </tbody> </table>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4종	전신 보호복	호흡기	일회용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	○	-	PAPR(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	김서림방지 및 굴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필요 시	○	발목 높이의 미끄럼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얹치마	필요 시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p>(자원관리팀) <필수여부 구분> 4종, 전신보호복 각각의 필수 개인보호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일회용 장갑> 179쪽 개정사유 참고</p>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	-																																																																		
	PAPR(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김서림방지 및 굴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럼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얹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4종	전신 보호복																																																																		
호흡기	일회용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	○	-																																																																	
	PAPR(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	김서림방지 및 굴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필요 시	○	발목 높이의 미끄럼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얹치마	필요 시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9	<p>□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p> <p>○ 개인보호구 4종 착용 예시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을 입는다. 4.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p>□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p> <p>○ 개인보호구 4종 착용 예시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을 입는다. 4.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p><일회용 장갑></p> <p>필요에 따라 추가 착용하라는 문구상 한 겹만 착용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임</p> <p>그러나, 178쪽 총족요건에 따르면 두 겹을 착용토록 되어 있어 정합성있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158			<p><지침관리팀></p> <p>소독내용 관련 수정(재택치료 지침 6-1판 근거)</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부록 12. 소독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의사환자가 거주한 가정 내 소독 방법</p> <p>[청소·소독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환기)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한다. <p>[청소·소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바닥)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소독 구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한다.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헝겂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잡이 달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림 (세탁)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세탁용 살균제를 고온에서 사용 시 유효성 감소,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로 사용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쿠션 등은 겹사결핵이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를 안전관리 특별대책(보통13)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p>[청소·소독 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워 및 환풍)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원사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p>부록 12. 소독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의사환자가 거주한 가정 내 소독 방법</p> <p>[청소·소독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환기)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한다. <p>[청소·소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바닥)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소독 구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한다.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헝겂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잡이 달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림 (세탁)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세탁용 살균제를 고온에서 사용 시 유효성 감소,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로 사용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겹사결핵이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를 안전관리 특별대책(보통13)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쓰레기는 ① 폐기물처리장으로, ② 도시락 보관하여, ③ 유해성으로 분류된 폐기물의 양이 내리보 소독 및 이물질 등 후 처리한다. - 재활용물 음식물쓰레기는 ① 분류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폐기물처리장으로 분류 후 다시 한번 소독을 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봉지 내리보 및 재활용물 분리소(소독) 후 처리한다. <p>[청소·소독 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워 및 환풍)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구 제거) 사용한 장갑과 마스크 등은 제거하고 손을 씻는다.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원사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p>개정사유</p> <p><지침관리팀></p>
163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업장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업장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등이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div>	소독 문구 수정
20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발취</p> <p>▶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p> <p>○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붙임2 참조)</p> <p>(신 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발취</p> <p>▶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참조</p> <p>○ (배출) ----- ----- 2중 밀폐)</p> <p>▶ 관외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피하고 차량·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재용량이 작은차량에서 큰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허가받은 임시보관창고 경우 가능. 단, 일시 보관 후 당일 운반</p> </div>	<p><생치확충반>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특별대책 제6판 반영</p>
203 ~ 20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p> <p>○ 확진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p> <p>▶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p> <p>-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p> </div>	<p>(삭 제)</p>	<p><생치확충반> 부록13(붙임2)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로 같음</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 지정·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06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 환자 안내문 》</p> <p>격리기간중에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제공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 를 충분히 소독한 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소독하여 분리 보관하고, 모든 쓰레기는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기 권장드립니다.</p> <p>격리기간 중에는 폐기물의 외부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배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p>	<p>〈생치확충반〉</p> <p>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특별 대책 제6판 반영</p>
208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삭제)	<p>〈해외출입국 관리팀〉</p> <p>2.21일부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대상 격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함에 따라, 관리방안 내용은 부록 전체 삭제함</p> <p>※ 방대본-6726호(2022.2.23.) 既시행</p>
187	<p>(부록22)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p> <p>○ (관리)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현황과 입원 환자 상태를 일일 보고*하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관리본부」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재원부적절**할 경우 퇴실 권고·명령</p> <p>* (보고경로) 의료기관 → 재원관리본부(cusavepeople.covid19@gmail.com) 및 지자체 → 중수본</p> <p>** ▲입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퇴실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원 부적절함</p> <p>- (의료기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환자의 치료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산소치료를 하고 있지 않거</p>	<p>(부록22) -----</p> <p>○ (관리) -----</p> <p>-----일일 보고*하며, 「중수본 재원관리팀」에서 주3회(월, 수, 금) 모니터링하여 -----</p> <p>-----</p> <p>* (보고경로) 의료기관 → 재원관리팀(icucovid2022@gmail.com) 및 지자체 → 중수본</p>	<p>〈재원관리팀〉</p> <p>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및 운영 효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긴급대응반 내 재원관리팀 신설 - 사무실 이전에 따른 e메일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중증병상 화전을 제고를 위한 손실보상 차등 지급(21.12.17.~)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나 ▲비강캐놀라 또는 ▲산소마스크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원해야 할 사유 기재 필요</p> <p>○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p> <p>① (재원관리본부*) 중등증(3~4단계) 중 일정 기준 이하 (예. 산소요구량 4ℓ이하)의 환자가 재원 중일 경우 중환자의학전문가가 재원 적정성 여부 검토</p> <p>* 팀장(총괄), 중환자의학전문가(적합성 판정 자문), 행정인력(자료수집 및 정리) 로 구성</p> <p>② (중수본) 재원관리본부 자문을 받아 부적합 건에 대하여 퇴실 권고(3일 이내 조치)</p> <p>- 퇴실권고를 받았음에도 재원해야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중수본(02-6260-3115, 3116, 3117)으로 연락 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전원 거부시 ③-1. 진행 ·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③-2. 진행 <p>③-1. (지자체) 환자가 전원권고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p> <p>㉠ (의료기관)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p> <p>(중수본) 환자 거부사례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 요청</p> <p>(보건소)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서식 3)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 15)를 발급*하고 설명</p> <p>*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p> <p>㉡ (환자) 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 부담</p> <p>㉢ (의료기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p>	<p>○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p> <p>① (재원관리팀) ----- (예. 산소요구량 5ℓ이하)의 환자가 -----</p> <p>* 팀장(총괄), 중환자의학전문가(적합성 판정 자문), 행정인력(자료수집 및 정리) 로 구성</p> <p>- 중환자의학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적합 건에 대하여 퇴실 권고(2일 이내 조치)</p> <p>- 퇴실권고를 받았음에도 재원해야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재원관리팀(02-2013-7100, 7118)으로 연락 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전원 거부시 ②-1. 진행 ·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②-2. 진행 <p>②-1. -----</p> <p>-----</p> <p>-----</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서식 16)로 통보</p> <p>* 향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환자 전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p> <p>㉠ (보건소) 통보받은 보건소는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 17)을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p> <p>㉡-2. (중수본)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 시 퇴실 명령 (익일까지 조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해당 의료기관 병상 단가의 10배→1배</p> <p>(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해당 의료기관 병상 단가의 10배→1배</p> <p>(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해당 의료기관 병상 단가의 10배→1배</p> </div> <p>- 퇴실명령 익일까지 미이행시 그 다음날부터 손실보상 삭감 (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p>	<p>㉡-2. -----</p> <p>- 퇴실명령 익일까지 미이행시 그 다음날부터 손실보상 삭감 (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p> <table border="1" data-bbox="965 788 1677 858"> <thead> <tr> <th>개월기간</th> <th>1~5일</th> <th>6~10일</th> <th>11~20일</th> </tr> </thead> <tbody> <tr> <td>손실보상 삭감</td> <td>14배 → 1배</td> <td>10배 → 1배</td> <td>6배 → 1배</td> </tr> </tbody> </table>	개월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14배 → 1배	10배 → 1배	6배 → 1배	
개월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14배 → 1배	10배 → 1배	6배 → 1배								
220	<p>〈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접촉자 분류 시 안내문]</p>	<p>(삭제)</p>	<p>〈역학조사팀〉</p> <p>접촉자 관리 기준에서 예방접종력 상관 없이 분류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아래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 중 수동감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을 제시).</p> <p>▶ 수동감시 관리 절차</p> <p>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p> <p>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p> <p>③ (수동감시 대상자에 해당) 수동감시 실시</p> <p>▶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235 443 907 614"> <thead> <tr> <th>구분</th> <th>대상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동감시</td> <td>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td> </tr> <tr> <td>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td> </tr> <tr> <td rowspan="2">격리조치</td> <td>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td> </tr> <tr> <td>감염취약시설 3종▶ 구심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td> </tr> </tbody> </table> <p>▶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p> <p>▶ 개별격리 불가능할 경우, 공동집단(코호트) 격리</p> <p>▶ 단,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p> <p>▶ 수동감시 예외 법적 근거</p> <p>-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름</p> <p>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종일로부터 6~7일자에 PCR검사▶ 시행</p> <p>▶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p> <p>▶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p> <p>- 접종일로부터 7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p> <p>▶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p> <p>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종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수동감시 해제</p> <p>▶ 접촉자 분류 시 함께 통지</p>	구분	대상자	수동감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격리조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구심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구분	대상자										
수동감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격리조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구심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222	<p><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p>	(삭제)	<p><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리 기준에서 예방접종력 상관 없이 분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이 존재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p> <p>◆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격리에 같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p> <p>◆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 아울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기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p> <p>[자가 모니터링]</p> <p>○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p> <p>○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p> <p>▶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p> <p>▶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p> <p>○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기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p> <p>- 자기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p> <p>[기타 생활수칙]</p> <p>○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p> <p>-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p> <p>○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p> <p>-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p> <p>○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p> <p>-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p> <p>-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p> <p>-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p> <p>-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p> <p>○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p> <p>▶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p> <p>[수동감시 중 검사]</p> <p>●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p> <p>●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p> <p>▶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기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p> <p>귀하의 검사일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월 _____ 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3	<p>▶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으로 최초 배정된 환자) 마지막 3일을 자가격리자에 준해 격리기간을 보내게 된 경우 해당 주소지 보건소(자가격리)로 전원처리</p> <p>▶ (코호트격리, 즉 보건소(자가격리)로 첫 배정된 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건소는 해당 환자 격리시작일 입력 - 증상변화 등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이송)하게 된 경우 해당 결과 입력 	<p>(삭 제)</p> <p>▶ (코호트격리, 즉 보건소(자가격리)로 첫 배정된 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건소는 해당 환자 격리시작일 입력 - 증상변화 등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이송)하게 된 경우 해당 결과 입력 	<p><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부록 34 관련)</p>
264	<p>□ 재검출(격리해제 부적정 판정 시)</p> <p>○ (각 시·도 담당) 격리해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확진되어 새로운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최근 격리해제·귀가 후 증상발현 등으로 다시 격리되는 등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격리해제 정보를 해제하고 귀가해 있던 기간을 ‘보건소(자가격리)’로 처리한 후, 그 다음 배정결과를 입력(전원)하여야 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시도 환자관리대장에서 ‘환자 히스토리’ 선택 → 마지막 정보 초기화 → 마지막 정보 재차 입력(입원일까지) → 격리해제일의 정보를 ‘전원’(보건소(자가격리))으로 처리 →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에 따른 병상배정 결과 입력(사유란에 “격리해제 부적정” 기입)</p> </div>	<p>□ 재검출(격리해제 부적정 판정 시)</p> <p>○ (각 시·도 담당)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중 재감염 추정사례로 분류되어 새로운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최근 격리해제·귀가 후 증상발현 등으로 다시 격리되는 등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격리해제 정보를 해제하고 귀가해 있던 기간을 ‘보건소(자가격리)’로 처리한 후, 그 다음 배정결과를 입력(전원)하여야 함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상 ‘재격리’ 처리하여야 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시도 환자배정에서 ‘재격리’ 선택 → 재격리 시점의 분류결과 입력(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 * 기존의 이력에 ‘격리해제일’이 입력되어 있어야 함</p> </div>	<p><환자관리팀> 재격리 처리기능 추가</p>
265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p> </div> <p>□ 퇴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p> <p>○ 그 동안 생활치료센터의 감염 예방 및 관리수칙 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p> </div> <p>□ -----</p> <p>○ -----</p>	<p><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수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귀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소 결정되었습니다.</p> <p><input type="radio"/> 퇴소 통보를 받으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소 절차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에는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고, 일시()에 격리가 해제됩니다.</p> <p><input type="radio"/> 자가격리자, 가족, 동거인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숙지하시어 감염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퇴소 후에도 발열 또는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이용(일반택시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가능)</p> <p>*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운전자만 동승하고 그 외는 탑승자제</p> <p>▶ (작성방법) 퇴소자 격리일시는 확진일(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 이후 1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재하고(보건소의 격리통지서 기준), 격리장소는 퇴소자의 실거주지(자가격리 장소)를 기재</p>	<p>-----</p> <p><input type="checkbox"/> -----</p> <p>-----</p> <p><input type="radio"/> -----</p> <p>-----</p> <p><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출근·등교 등 외출 가능하지만,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하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p> <p>-----</p> <p>-----</p> <p>※ -----</p> <p>-----</p> <p>-----</p> <p>* -----</p> <p>-----</p> <p>(삭 제)</p>	
248 ~	〈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산발·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	〈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6	<p>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산발·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p> <p>가. 기본 원칙 : 시설별 자체 대응</p> <p>○ (시설별 방역관리자)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에 따라 ① 접촉자 조사, ② 신속항원검사(RAT) 안내, ③ RAT 2회(Day1, Day 3)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등교 제한 권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학급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div> <p>나. 신속항원 검사(RAT) 2회 실시 권고</p> <p>○ 검사 장소 : 시설 자체 또는 의료기관, 보건소 선별진료소</p> <p>○ 검사 횟수 : 2회[접촉자 분류 당일(1일차), 3일차]</p> <p>○ 검사결과 후속 조치 : RAT 양성자는 PCR 검사 실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예시) 접촉자 분류 당일(1일차) RAT 검사결과 후속 조치</p> <p>① RAT 양성 → PCR 검사 → PCR 양성 → 확진자로 관리</p> <p>② RAT 양성 → PCR 검사 → PCR 음성 → 3일차 RAT 검사</p> <p>③ RAT 음성 → 3일차 RAT 검사▶</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RAT 검사결과에 따른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T '양성' : PCR 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등교 제한 권고 - RAT '음성' :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간 KF 94급 이상 마스크 착용 후 밀접접촉 최소화 하면서 출근, 생활 가능 </div>	<p>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원칙은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p> <p>▶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p> </div> <p>1. 역학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역학조사 관련 용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용어</th> <th>정의</th> </tr> </thead> <tbody> <tr> <td>감시</td> <td>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td> </tr> <tr> <td>잠복기</td> <td>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td> </tr> <tr> <td>선파가능기간</td> <td>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td> </tr> <tr> <td>세대기</td> <td>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td> </tr> <tr> <td>유행곡선</td> <td>시간에 따른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td> </tr> <tr> <td>선형적 접촉자 조사</td> <td>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 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td> </tr> <tr> <td>후행적 접촉자 조사</td> <td>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동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 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td> </tr> <tr> <td>지표환자</td> <td>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td> </tr> <tr> <td>선행확진자</td> <td>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확진일이 앞선 환자)</td> </tr> <tr> <td>근원환자</td> <td>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확진환자 대응절차]</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시료 구분 조사대상</td> <td style="width: 15%;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width: 4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확진환자 발생 시</p> <p>확진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노출규모 파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필요시 이동통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QR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역학조사서 시스템 등록 </div>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추가환자 발생 시</p> <p>접촉자 또는 자가격리자 중 확진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 여부 결정 · 타지역 상황 공유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확진자 지정 · 시스템 등록 · 필요시 이동통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QR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조사서 시스템 등록 </div> </td> </tr> </table> <p>(이하 생략)</p>	용어	정의	감시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잠복기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	선파가능기간	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	세대기	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유행곡선	시간에 따른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	선형적 접촉자 조사	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 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후행적 접촉자 조사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동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 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지표환자	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	선행확진자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확진일이 앞선 환자)	근원환자	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	시료 구분 조사대상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확진환자 발생 시</p> <p>확진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노출규모 파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필요시 이동통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QR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역학조사서 시스템 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추가환자 발생 시</p> <p>접촉자 또는 자가격리자 중 확진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 여부 결정 · 타지역 상황 공유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확진자 지정 · 시스템 등록 · 필요시 이동통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QR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조사서 시스템 등록 </div>	<p>간소화에 따라서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한 경우 참고자료로 전체 현행화하여 활용 안내</p>
용어	정의																													
감시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잠복기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																													
선파가능기간	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																													
세대기	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유행곡선	시간에 따른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																													
선형적 접촉자 조사	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 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후행적 접촉자 조사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동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 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지표환자	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																													
선행확진자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확진일이 앞선 환자)																													
근원환자	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																													
시료 구분 조사대상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확진환자 발생 시</p> <p>확진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노출규모 파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필요시 이동통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QR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역학조사서 시스템 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추가환자 발생 시</p> <p>접촉자 또는 자가격리자 중 확진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 여부 결정 · 타지역 상황 공유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확진자 지정 · 시스템 등록 · 필요시 이동통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QR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사례조사서 시스템 등록 </div>																										
268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부록 37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p> <p>■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p> <p><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X8일 차 0시)부터 해제 - (진단 시 무증상자)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 7일 후 격리해제 되신 경우 3일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대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은 제한하시고, 사적모임 등은 자제주시기 바랍니다.</p> <p><검사 기반 격리해제>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진단 시 무증상자)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p> <p>■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p>	<p>부록 37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p> <p>■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p> <p><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X8일 차 0시)부터 해제 - (진단 시 무증상자)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 7일 후 격리해제 되신 경우 3일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대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은 제한하시고, 사적모임 등은 자제주시기 바랍니다.</p> <p><검사 기반 격리해제>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진단 시 무증상자)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p> <p>■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p>	<p>개정사유</p> <p>“격리해제확인서” 폐지</p>
269			<p><진단총괄팀> 우선순위 추가 조정 내용 현행화 (공문) (방대본-8846, '22.3.7.) (공문) (방대본-6240, '22.2.21.)</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small;"> <thead> <tr> <th colspan="2">우선순위 검사 대상</th> <th>증빙자료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 </tr> <tr> <td>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 <td>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 <td>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 </tr> <tr> <td rowspan="3">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 <td>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 <td>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td> </tr> <tr> <td>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검사자 포함)</td> <td>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td> </tr> <tr> <td>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td> <td>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 </tr> <tr> <td rowspan="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 <td>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td> <td>재직증명서, 사원증 등</td> </tr> <tr> <td>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td> <td>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td> </tr> <tr> <td>휴가 복귀 질병</td> <td>휴가증</td> </tr> <tr> <td>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td> <td>입원 관련 증빙서류</td> </tr> <tr> <td>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td> <td>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td> <td>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된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준에 한함)</p>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검사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질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된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small;"> <thead> <tr> <th colspan="2">우선순위 검사 대상</th> <th>증빙자료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 <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 </tr> <tr> <td>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 <td>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 <td>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 </tr> <tr> <td rowspan="3">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 <td>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 <td>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td> </tr> <tr> <td>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검사자 포함)</td> <td>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td> </tr> <tr> <td>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td> <td>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 </tr> <tr> <td rowspan="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 <td>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td> <td>재직증명서, 사원증 등</td> </tr> <tr> <td>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td> <td>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td> </tr> <tr> <td>휴가 복귀 질병 입영 징정</td> <td>휴가증 입영(소집) 일지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td> </tr> <tr> <td>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td> <td>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td> </tr> <tr> <td>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td> <td>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td> <td>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 확인된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준에 한함)</p>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검사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질병 입영 징정	휴가증 입영(소집) 일지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 확인된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검사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질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된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검사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질병 입영 징정	휴가증 입영(소집) 일지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 확인된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																																																									

Q&A

27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Q1. 누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div>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PCR 검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Q1. PCR 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div>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278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Q2.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p> <p>○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p> <p>〈검체 종류별 채취 방법〉</p> <table border="1" data-bbox="253 456 913 595"> <tr> <td>상기도 검체</td> <td>-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td> </tr> <tr> <td>하기도 검체</td> <td>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td> </tr> </table> <p>○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p>	상기도 검체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p>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p> <p>○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p> <p>〈검체 종류별 채취 방법〉</p> <table border="1" data-bbox="1003 456 1664 595"> <tr> <td>상기도 검체</td> <td>-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td> </tr> <tr> <td>하기도 검체</td> <td>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td> </tr> </table> <p>○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p>	상기도 검체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상기도 검체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상기도 검체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279	<p>Q3.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p> <p>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p> <p>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p> <p>Q7. 가래가 없으면 채취를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p> <p>○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채취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p>	<p>Q3. PCR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p> <p>Q4. PCR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p> <p>Q6. PCR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p> <p>(삭제)</p>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280	<p>Q8.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p>	<p>Q7. PCR 검사를 위해,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p>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Q10. 코로나 항체검사는 무엇인가요?</p> <p>Q11. 열 스캐너로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낼 수 있나요?</p> <p>○ 열 스캐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즉,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p> <p>○ 하지만 열 스캐너는 발열 증상이 없는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환자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중앙값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p>	<p>〈항체검사〉</p> <p>Q21. 코로나 항체검사는 무엇인가요?</p> <p>(삭제)</p>	
281	<p>Q12.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비용이 얼마인가요?</p> <p>○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급여 청구방법은 기존 국비지원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p> <p>Q13.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Q14. 해외입국 또는 접촉 관련으로 격리기간 중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외의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인정되나요?</p> <p>○ 일반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 해외입국자 또는 접촉자임을 밝힌 후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검사 결과서를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시 인정 가능합니다.</p> <p>▶ 불가피한 사유 : 지자체 판단에 따름</p>	<p>(삭제)</p> <p>Q10.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나요?</p> <p>(삭제)</p>	<p>(중수본 보험급여과) 삭제</p> <p>(진단총괄팀) 문구 수정</p>
282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Q15.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p> <p>○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p> <p>▶ 신속항원검사 대상</p> <p>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p> <p>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p>	<p>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p> <p>○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다만,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p> <p>▶ 신속항원검사 대상</p> <p>⊕ ----- ▶ ----- -----</p> <p>② (삭제)</p>	<p>〈진단총괄팀〉 음성확인서 발급 중지 현행화 (공문) (방대본-7528. '22.2.28.)</p>
282	<p>Q16.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Q17.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는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p> <p>Q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는 유료인가요?</p> <p>○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p>	<p>Q11.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는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p> <p>Q15. ----- ? (삭제)</p> <p>○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다만,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p>	<p>(진단총괄팀) 문구 수정</p> <p>〈진단총괄팀〉 음성확인서 발급 중지 현행화 (공문) (방대본-7528. '22.2.28.)</p>
283	<p>Q19.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p>	<p>〈신속항원검사〉</p> <p>Q1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p>	<p>(진단총괄팀) 문구 수정</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Q20.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Q21.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검사를 할 수 있나요?</p> <p>Q22.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노약자의 검사결과로도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설명서를 따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검사를 보조하거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관리자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시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p>Q16.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Q17.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할 수 있나요?</p> <p>Q18. ----- -----?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삭제) 	<p>〈진단총괄팀〉 음성확인서 발급 중지 현행화 (공문) (방대본-7528. '22.2.28.)</p>
284	<p>Q24.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희망자에 	<p>Q19. ----- ----- -----?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 ----- ----- -----.</p>	<p>〈진단총괄팀〉 일부 문구 수정, 신속항원검사 제품 판매처 현행화</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한해, 1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이 가능합니다.</p> <p>▶ (검사희망자) 신속항원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임이 확인된 자</p> <p>○ 선별진료소 방문 없이 자택에서 검사받고자 하시는 분은 약국,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Q24. 거주지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p> <p>○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우선순위 대상자 또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p>○ ----- ----- -----.</p> <p>▶(-----) ----- --, -----</p> <p>○ ----- ----- 약국 등에서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Q20. 거주지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p> <p>○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우선순위 대상자 또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286	<p>5. 접촉자 및 확진환자</p> <p>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p> <p>○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을 조사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감염취약시설 3종</p> <p>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p> <p>② 정신건강시설</p> <p>③ 장애인시설</p> <p>▶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p> </div> <p>-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p>	<p>5. -----</p> <p>Q1. -----</p> <p>○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를 조사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감염취약시설 3종</p> <p>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p> <p>② 정신건강시설</p> <p>③ 장애인시설</p> <p>▶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p> </div> <p>- -----</p>	<p><역학조사팀></p> <p>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안내 관련 사항 현행화</p> <p>(공문) (방대본-5002, '22.2.11.)</p> <p>(공문) (방대본-7354, '22.2.27.)</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p> <p>-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시까지 접촉자를 조사</p>	<p>-----</p> <p>-----</p> <p>- -----</p> <p>----</p>	
267	<p>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p> <p>○ 예방접종력, 감염취약시설 연관성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 능동감시,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p>	<p>Q3. -----</p> <p>○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실시합니다.</p> <p>○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합니다.</p>	<p><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안내 관련 사항 현행화 (공문) (방대본-5002, '22.2.11.) (공문) (방대본-7354, '22.2.27.)</p>
288	<p>5. 접촉자 및 확진환자</p> <p>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p> <p>○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부록 14]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참조)</p> </div> <p>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p> <p>○ 사전 허가받지 않고 외출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5. -----</p> <p>Q6. -----?</p> <p>○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p> <p>-----</p> <p>-----.</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삭제</p> </div> <p>Q7. -----?</p> <p>○ 사전 허가 없이 규정 외 사유로 외출하거나 통상의 외출로 인정할 수 없을만큼 장기간 외출한 경우-----</p> <p>-----</p> <p>-----.</p>	<p>(격리관리팀) 용어 명확화 및 생필품 지원 중단 반영</p>
291	<p>Q8.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자가 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인 경우는, 검체</p>	<p>Q8. 삭제</p> <p>Q9은 Q8과 동일 문답이므로 전체 삭제</p>	<p>(격리관리팀) 격리해제전 검사를 PCR의무에서 RAT권고로 변경 반영</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검체채취는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재채취 검체의 검사에서도 미결정이라면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p> <p>▶ 그 외 사항은 “코로나19 검사 Q&A”(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을 참고</p>		
289	<p>Q4.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p> <p>○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 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p>Q4.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p> <p>○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 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p>〈환자관리팀〉 격리해제 기준 관련 설명 추가</p>
291			Q16 삭제, 내용 중복됨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Q7.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p> <p>○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되어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 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p> <p>○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Q16.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양성 반응은 어떤 의미인가요?</p> <p>○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p>	<p>Q7.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p> <p>○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되어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 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p> <p>○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92	<p>Q17. 확진자인 아이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보호자는 언제 퇴소 또는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p> <p>○ 동반 입소자인 보호자(입소 당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는 확진자인 아이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요건이 되었을 때, 퇴소일 하루 전 1회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유지한다면 퇴소가 가능합니다(임상증상에 대한 의료진판단에 따라 입소 중간에 추가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7일만 머무른 경우 자가격리 3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p> <p>- 그러나 보호자는 확진자인 아이를 격리해제 시점까지 밀</p>	<p>Q14. 확진자인 아이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보호자는 언제 퇴소 또는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p> <p>○ 동반 입소자인 보호자(입소 당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는 확진자인 아이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요건이 되었을 때, 퇴소일 하루 전 1회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유지한다면 퇴소가 가능합니다(임상증상에 대한 의료진판단에 따라 입소 중간에 추가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p>	<p><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p>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p>접촉하였기 때문에 격리해제 시점부터 10일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담당자(퇴소 직후 격리해제되는 경우) 또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관리 담당자(퇴소 후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보호자의 상황을 반드시 전달하여 별도의 자가 격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p> <p>▶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반입소 보호자의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일 기준 7일간 수동감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일 기준 7일간 자가격리 <p>▶ 아이가 퇴소한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는 동안 돌봄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와 접촉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Q19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확진된 보호자는 입소하는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경우 PCR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증상 확진자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건 충족 시 퇴소 및 자가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p>▶ (예시) 아이가 9월 1일 확진되어 입소하고 7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3일간 자가격리 하는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235 1257 922 1380"> <tr> <td>구분</td> <td>9.1</td> <td>9.2 ~9. 7</td> <td>9.8~9.10</td> <td>9.11~9.17</td> <td>9.18</td> </tr> </table>	구분	9.1	9.2 ~9. 7	9.8~9.10	9.11~9.17	9.18	<p>(삭 제)</p> <p>(삭 제)</p> <p>----- 퇴소가 가능합니다.</p> <p>▶ (예시) 아이가 9월 1일 확진되어 입소하고 7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3일간 자가격리 하는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985 1257 1673 1380"> <tr> <td>구분</td> <td>9.1</td> <td>9.2 ~9. 7</td> <td>9.8~9.10</td> <td>9.11~9.17</td> <td>9.18</td> </tr> </table>	구분	9.1	9.2 ~9. 7	9.8~9.10	9.11~9.17	9.18	
구분	9.1	9.2 ~9. 7	9.8~9.10	9.11~9.17	9.18										
구분	9.1	9.2 ~9. 7	9.8~9.10	9.11~9.17	9.18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35 252 324 403">[확진 자] 아이</td> <td data-bbox="324 252 392 403">입 소</td> <td data-bbox="392 252 459 403">시 설 격 리</td> <td data-bbox="459 252 622 403">퇴소 및 자가격리</td> <td data-bbox="622 252 792 403">격리해제 (9.11 12시)</td> <td data-bbox="792 252 925 403"></td> </tr> <tr> <td data-bbox="235 403 324 624">[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td> <td data-bbox="324 403 392 624">입 소</td> <td data-bbox="392 403 459 624">시 설 격 리</td> <td data-bbox="459 403 622 624">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td> <td data-bbox="622 403 792 624">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td> <td data-bbox="792 403 925 624">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td> </tr> <tr> <td data-bbox="235 624 324 874">[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td> <td data-bbox="324 624 392 874">입 소</td> <td data-bbox="392 624 459 874">시 설 격 리</td> <td data-bbox="459 624 622 874">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td> <td data-bbox="622 624 792 874">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td> <td data-bbox="792 624 925 874">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td> </tr> </table>	[확진 자] 아이	입 소	시 설 격 리	퇴소 및 자가격리	격리해제 (9.11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985 252 1075 403">[확진 자] 아이</td> <td data-bbox="1075 252 1142 403">입 소</td> <td data-bbox="1142 252 1209 403">시 설 격 리</td> <td data-bbox="1209 252 1373 403">퇴소 및 자가격리</td> <td data-bbox="1373 252 1543 403">격리해제 (9.11 12시)</td> <td data-bbox="1543 252 1675 403"></td> </tr> <tr> <td data-bbox="985 403 1075 624">[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td> <td data-bbox="1075 403 1142 624">입 소</td> <td data-bbox="1142 403 1209 624">시 설 격 리</td> <td data-bbox="1209 403 1373 624">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td> <td data-bbox="1373 403 1543 624">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td> <td data-bbox="1543 403 1675 624">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td> </tr> <tr> <td data-bbox="985 624 1075 874">[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td> <td data-bbox="1075 624 1142 874">입 소</td> <td data-bbox="1142 624 1209 874">시 설 격 리</td> <td data-bbox="1209 624 1373 874">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td> <td data-bbox="1373 624 1543 874">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td> <td data-bbox="1543 624 1675 874">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td> </tr> </table> <p data-bbox="985 882 1675 1161">* 보호자 수동감시 권고사항 :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p>	[확진 자] 아이	입 소	시 설 격 리	퇴소 및 자가격리	격리해제 (9.11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확진 자] 아이	입 소	시 설 격 리	퇴소 및 자가격리	격리해제 (9.11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확진 자] 아이	입 소	시 설 격 리	퇴소 및 자가격리	격리해제 (9.11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295	<p data-bbox="224 1201 925 1233">Q2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p> <p data-bbox="224 1262 925 1318">○ 격리 시점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p> <p data-bbox="246 1334 925 1366">▶ 국내 감염된 무사격체류 외국인 포함」</p>	<p data-bbox="974 1201 1675 1233">Q1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p> <p data-bbox="974 1262 1675 1318">○ 격리 시점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p> <p data-bbox="996 1334 1675 1366">▶ 국내 감염된 무사격체류 외국인 포함」</p>	<p data-bbox="1709 1190 2056 1310">(지침관리팀)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에 따른 수정</p>																																				